

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6. 1. 22.)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-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(2026. 2. 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건축디자인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에 근거하여 관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나무류 중 하나인 해송의 식재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해송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(안 제16조제2항제3호)

3. 제안근거

-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(반출금지구역 지정·해제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관내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현실을 반영하여,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서 해송을 의무 식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으로
 - ▶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교목 중 5퍼센트 이상을 해송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

- 종합검토 결과,
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관내 주거지역까지 피해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송 식재를 의무화한 현행 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,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